

## 부동산매입확약서

○○○(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의 보증상품(임대보증금보증, PF보증 등 “매도인”이 임대주택 또는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발급한 보증 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고 해당 보증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별첨의 임대주택을 매입하기로 한다. “매도인”, “매수인”과 “주채무자”는 위 확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약서 3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1. “주채무자”가 이용한 보증상품이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 발생으로 “매도인”이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별첨 임대주택을 매입하기로 한다. 다만, “매수인”이 임대주택 매입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매입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한다.
2.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래의 지급 조건과 달리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계약금)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10퍼센트
  - (잔 금) 매매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매매대금의 90퍼센트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매매대금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한다. 2개의 감정평가법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1개씩 선정하기로 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4.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의 구상채권(대위변제금 및 이자, 지연배상금 및 부대비용 등 대위 변제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채권) 충당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그 잔여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매수인”은 그 잔여액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매수인”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주채무자”는 “매수인”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매도인”에게는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6. 임대주택매입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와 “매수인”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본 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첨부 매입대상 임대주택 목록 1부.

년 월 일

“매도인” (인)

“매수인” (인)

“주채무자”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별첨-

## 매입대상 임대주택 목록

소재지 :

| 연 번 | 동 | 호 수 | 비 고(권리제한사항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